

#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3. 9. .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진 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수감소 전망에 따라 세수결손 반영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반영과 기편성된 예산의 삭감, 집행잔액의 반납 등 세출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안)으로써 2023. 8. 30. 제출된 안건입니다.

-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 3,287억 9,252만 5천원에 비하여 833억 1,071만 5천원이 증가된 2조 4,121억 324만원입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6억 2,514만 9천원이 증가된 2조 650억 8,5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6억 8,556만 6천원이 증가된 3,470억 1739만원입니다.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기정예산	증 감	비고
총 계	2,412,103,240	2,328,792,525	83,310,715	3.58%
일 반 회 계	2,065,085,850	2,014,460,701	50,625,149	2.51%
특 별 회 계	347,017,390	314,331,824	32,685,566	10.4%

□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 506억 2,51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세외수입 198억 8,322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59억 7,092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387억 8,506만 4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3,691억 2,404만 3천원에서 1.64% 증가한 3,751억 6,342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17%에 해당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제2회 추경	기정 예산	증 감	비 고
총 계	387,416,699	381,108,413	6,308,286	1.66%
일 반 회 계	375,163,420	369,124,043	6,039,377	1.64%
특 별 회 계	12,253,279	11,984,370	268,909	2.24%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국·소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억 6,714만원 보다 4.31% 감소한 2억 5,562만원으로, 1,1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7억 9,598만 5천원보다 20.03% 증가한 33억 5,603만 8천원으로, 바로처리 사업 운영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8억 9,292만원 보다 3.52% 감소한 47억 2,052만원으로, 방송·영상 장비 유지관리 사업 37,000천원 증액,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사업 집행잔액 78,33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억 4,476만 2천원 보다 17.28% 증가한 9억 9,074만 6천원으로, 소송 비용 지급 사업 1억 6천만원 등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억 6,885만 2천원보다 6.09% 감소한 1억 5,857만 2천원으로, 1,0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688억 2,287만 1천원 보다 11.49% 증가한 2,770억 9,1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 1억 2천만원, 방범용 CCTV 개선사업 2천 8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79억 1,507만 3천원 보다 25.72% 증가한 476억 6,774만 8천원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8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9,727만원보다 0.61% 증가한 1억 529만 3천원으로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 사업 3억 5,690만원 전액 감액 편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6,19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청사유지관리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관리로 기정예산액 119억 8,437만원 보다 2.24% 증가한 122억 5,327만9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8.38%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과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의 신설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를 포함한 270,697천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사항이며,
- 고향사랑기금은 지난 7월에 본 기금을 신설하여 고향사랑기부금 20,033천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